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08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32114 취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여행사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5. 1. 16.
판 결 선 고	2015.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25. 원고에게 한 취득세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인천 서구 당하동 604 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08

7필지 합계 5,38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는 2005. 6. 3. 법인등기부상에 이 사건 수용부동산을 인천지점으로 등록하였고, 2008. 10. 1. 사업자등록증상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주사무소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수용부동산으로 등록하였다.

다.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 [redacted]공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인천검단지구 조성사업(사업인정고시일 2009. 2. 6. [redacted]고시 제2009-51호,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수용대상으로 편입되었고, 원고와 [redacted]공사는 이 사건 수용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는 2011. 1. 18., 건물 등에 대하여는 2013. 7. 22. 각 수용보상 협의를 마쳤으며, 원고는 2011. 2. 15. 위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2013. 11. 18. 위 건물 등의 수용보상금을 각 수령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소유권을 [redacted]공사가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19. [redacted]시 [redacted]동 246-17, 같은 동 246-18, 같은 동 247-1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4. 1. 15. 위 각 토지 지상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23.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관한 취득세 등으로 164,565,000원을, 2014. 3. 10.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관한 취득세 등으로 28,187,15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4.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수용으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5. 원고에게 지방세특례법 시행령 제34조 제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08

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4. 5. 30.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부터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전인 2005. 6. 3.부터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수용부동산을 지점으로 등록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에서 정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2주장

이 사건 시행령은 조세행정 편의상 획일적으로 사업자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았고, 그 결과 수용되는 부동산에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여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게 함으로써 부당하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 받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은 통상의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어 비례성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이거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헌법상 평등권 내지 조세평등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08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헌인 이 사건 시행령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시행령은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이 사건 시행령의 문언에 의하면, 원고가 2005. 6. 3.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수용부동산을 원고의 지점으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관하여 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8. 10. 1.에 이르러서야 그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에서 정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08

2) 제2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시행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세 감면 조치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재산권의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취득세 감면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바33 결정 참조).

나) 나아가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에 비추어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감면대상이 과소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자신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감면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정당화된다(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가8 결정 참조).

그런데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와 그 사업내용 및 과세자료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근거과세와 세수확보 등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공평과세를 구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반면에(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바168 결정 참조), 법인등기부는 법인과 관련한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에게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각 제도의 목적이 서로 상이한 점,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회통념상 해당 소재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객관적이고 핵심적인 징표인 점, 만일 법인등기부상 지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본다면, 법인으로서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08

하여 법인등기부상 지점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을 부당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령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삼았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헌법상 평등권 내지는 조세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태혁

판사 송명주

판사 박강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08

별지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08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대체취득이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 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08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

②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